

議會 定期會 第5次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에 所屬한 本議員과 李敬雲議員의 書面動議로 提出한 것을 出席委員 全員이 滿場一致로 當委員會 案으로 採擇하여 提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地方自治의 發展은 물론 地域開發 및 地方產業, 文化를 育成 發展시켜 住民福祉의 向上을 기할 수 있도록 地方自治時代에 副應한 權限과 機能이 再定立될 수 있도록 地方自治法의 改正에 우리 地方議員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本 建議案이 서울特別市議會 案으로 確定되어 國會 等 關係 中央政府에 地方自治法 改正을 建議할 수 있도록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特別市議會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 委員 呂範九.

○副議長 文一權 그러면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에서 提案한 地方自治法改正建議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님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異議 없으시면 可決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建 議 文 案

모든 國民의 關心과 期待 속에 地方自治가 30年만에 復活된 後 地域社會의 發展과 眞正한 住民의 意思가 地方行政에 反映되도록 우리 地方議會 議員 모두는 渾身の 努力을 다하여 커다란 役割을 遂行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커다란 自負心과 矜持를 느낍니다.

地方自治制는 中央에 集中되어 있는 權限을 民主的인 方法으로 配分하여 地方政府의 自主

性을 높이고 地方議會 運營의 效率性과 地方議會 議員의 圓滑한 議政活動을 保障하는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實質的인 住民에 의한 住民自治制가 確立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昨今の 地方自治를 爲한 諸般 關係 法令과 制度는 地方議會 議員들의 意慾과 努力을 뒷받침하는데 엄청난 限界가 있음을 실감하면서, 國家의 發展과 完全한 地方自治의 定着을 爲해서는 地方自治法의 早速한 改正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서울特別市議會 議員들은 그간의 議政活動을 통하여 얻은 經驗을 토대로 現行의 地方自治法中 不合理한 內容에 대하여 全國市·道議會 議長들과 協議하여 수차례 걸쳐 反映토록 建議하여 왔습니다.

非民主的이며 閉鎖的인 要素가 많은 現行 地方自治法에 대한 우리의 改正努力에 지극히 인색했던 中央政治圈이 우리 地方議員들의 合理的인 名分을 담은 要求事項을 94.3.16. 地方自治法 改正時 일부 反映하였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現行 地方自治法은 地方官治法 내지 自治規制法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地方議員들의 共通된 認識입니다.

實際的으로 現行 自治法에서는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的으로 規定한 後에 個別法에 의하여 다시 國家事務化할 수 있는 例外 規定을 두고 있는데 이는 地方自治의 本質的인 要素를 侵害하는 중요한 毒素條項으로서 指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廣域自治團體가 갖고 있던 「懲役」 「拘留」 等に 관한 權限을 「罪刑法定主義」라고 하는 形式論理를 앞세워 削除하고 말아 條例의 實効性을 크게 위축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現行 地方自治法에는 事事件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內務部長官에게 報告한다」 등 規制 일변도로 일관하고 있어 中央政府의 地方自治에 대한 시각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地方自治는 時代的인 大勢이며 國際化·世界

<p>化에 順應하는 일입니다.</p> <p>國家機能과 地方機能을 조화롭게 통합함으로써 國家 및 地方行政의 能率性を 向上시키고 住民의 福祉와 地域發展을 앞당겨 窮極적으로 國家 競爭力의 提高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p> <p>이제 우리 地方議員들은 國家競爭力으로 이어지는 世界化·國際化 隊列에 積極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不合理한 地方自治法의 改正을 強力히 要求하는바입니다.</p> <p>아울러 地方自治法뿐만 아니라 現行의 모든 制度가 地方化時代에 걸맞게 住民便宜 위주로 보완 改善되어야 할 것임을 闡明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4.12. 서울特別市議會 議員 一同</p> <p style="text-align: center;"><u>地方自治法 改正建議 要旨</u></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地方自治 實施의 根本趣旨에 따라 地方議會 運營의 效率성과 地方議會議員의 圓滑한 議政活動을 提高하고, 地方自治制度의 早期定着과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의 改正을 建議함.</p> </div> <p>□主要 建議事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個別法 制限規定을 削除함.(第9條第2項 但書規定) 2. 現行 自治事務의 例示(57個)를 대폭 더 늘림.(第9條第2項 1~5호) 3.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에 違反되지 않는 한 그 事務에 關係 條例를 制定할 수 있도록 함.(第15條) (現行) “法令의 範圍안에서”→(改正) “法令에 違反되지 않는 한” 4. 條例로써 規定할 수 있는 罰則의 範圍를 擴大함.(第20條) 5. 地方自治團體 및 그 長에게 委任된 國家事務와 市·道事務의 監査는 각각 당해 地方議會가 實施토록 함.(第36條第3項) 6. 行政事務監査 또는 調査를 위한 節次와 其他 必要한 事項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p>條例로 定하도록 함.(第36條第7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地方議會에서의 發言·鑑定등에 關係한 節次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도록 함.(第36條第7項) 8.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이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 부득이 其他 關係公務員이 出席·答辯하는 경우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의 承認을 얻어 出席·答辯하도록 함.(第37條第2項) 9. 定期會 集會日을 市·道議會는 11月 20日을 11月 10日로, 市·郡 및 自治區議會는 11月 25日을 11月 20日로 하도록 함.(第38條) 10. 地方議會에 두는 事務職員을 當該 地方議會 議長이 任命하도록 함.(第83條) 11. 地方議會 議決에 대한 地方自治團體長의 再議要求 사유를 法令에 違反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함.(第98條第1項) 12.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法律이 定한 基準과 限度 內에서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必要한 行政機構를 設置토록 함.(第102條第1項) 13.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地方公務員의 定員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도록 하고, 國家公務員을 들 수 있는 條項 削除(第103條) 14. 地方自治團體의 直屬機關은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設置할 수 있도록 함.(第104條) 15.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 會計年度 開始 60日 前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 開始 50日 前까지 地方議會에 提出하도록 함.(第118條) 16. 地方自治團體의 委任事務에 關係한 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法令에 違反된다고 認定되는 경우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書面으로 是正 命令토록 하고, 不履行時는 管轄 高等法院에 訴를 提起할 수 있도록 함.(第157條)
---	---

- 17.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행하는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관한 監査規定을 削除함.(第158條)
- 18. 中央政府의 통제요인이 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와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등의 制限 規定 削除

2. 서울市政및教育行政에關한質問

(10時 30分)

○副議長 文一權 議事日程 第2項 서울市政 및 教育行政에 관한 質問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오늘도 모두 여섯 분 議員님의 質問이 으시겠습니다. 會議進行은 午前에 質問을 모두 마치고 午後에 一括해서 執行部側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質問하실 議員님께서 어제와 같이 質問時間이 15分 以內임을 양지하셔서 質問時間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質問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文化教育委員會 所屬 崔沆洛議員님의 質問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沆洛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 및 同僚議員 여러분, 또한 市政發展에 수고가 많으신 市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저는 民主自由黨 所屬 蘆原區出身 崔沆洛議員입니다.

서울은 世界化를 追求하는 韓國의 首都로서 歷史적으로는 世界에서 열세 번째의 都市이고 人口는 네 번째로 많은 巨大都市로서 이제는 우리들만의 서울이 아니라 世界 속의 서울이 되어 政治, 經濟, 社會, 文化 等 다양하게 發展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金泳三 大統領께서도 創意성과 生産性を 위주로 하는 世界化推進委를 構成하라는 指示가 있었듯이, 世界化란 國內의으로 모든 分野에 걸쳐 合理性和 競爭力이 定着되게 하고, 國外的으로는 積極的으로 進出하고 協力하여 物質繁榮은 물론 21世紀를 바라보는 차세대를 위한 改革으로 생각됩니다.

大統領의 構想에 뜻을 같이 한다는 次元에서 우리의 서울도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東北亞 據點都市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理想的인 國際都市로 탈바꿈시키는 데 서울시 全 公務員은 心機一轉하여 투철한 使命感과 責任感을 가지고 創意성과 生産성에 전력을 다하여 行政改革을 펴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本議員은 4年 任期 동안 첫 定期會 때와 마지막 定期會를 통하여 市政質問을 하게 됨을 참으로 뜻 깊고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도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무거운 마음과 착잡한 심정으로 몇 가지 質疑하고자 합니다.

市長은 政府와 國會에서 여러 分野에 걸쳐서 重責을 맡아 보고, 또 일을 해 본 經驗도 있고 그래서 그 연륜과 能力을 믿고 이 質問을 政府에 建議事項으로써 市長의 見解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政府에서 中央廳 博物館을 撤去하고 龍山에다가 새로운 博物館을 建立하겠다는 發表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비록 撤去를 하기로 決定이 났지만 미래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價値性이 있다고 判斷이 되면 번복할 수도 있다는 그런 次元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大學教授나 專門家에 의하면 中央廳 博物館을 헐어서 없애지 말고, 원형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지하로 옮겨서 博物館 및 展示場으로 活用을 하고, 그 위의 地面을 유리관으로 덮어씌우게 되면 地面에서 地下를 내려다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유리관 위의 地面은 公園을 만들어 가지고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아주 볼만한 그런 觀光名所가 되어 歷史에도 대단히 좋은 教育의場이 된다는 그러한 案이 나왔습니다. 專門家나 企業家들에 의하면 충분히 그렇게 施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歷史的으로는 保存의 價値가 있다고 判斷이 되는 것은 保存을 해서 後世들에게 教育의 聖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또한 重要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